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81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김성원·김선교·고동진

정동만 • 박충권 • 박성훈

김소희 · 김위상 · 임이자

김정재 • 인요한 • 박준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규모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의"를 "체인사업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	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			
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u>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다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u>체인사업</u>	<u>체인사업의</u>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			
<u>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u> 형			
태로 운영하는 점포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